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국립소방연구원에규 제22호, 발령일: 2025. 12.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심사

제2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3.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2항의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운영지원과장

제3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시작 전 별지 제7호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보직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

2. 별지 제5호서식의 적격성 심사

3. 근무성적(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

4. 다면평가 결과

③ 제2항제2호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천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명하되, 특정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제2항제4호 다면평가는 보직심사위원회 전에 ‘보직심사 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 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 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제5조(보직심사위원회 결정) 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별지 제5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사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신규보직 심사)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다.

1.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제7조의 보직연장심사에서 부결자가 발생한 경우

제7조(보직연장 심사) 연구지원과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응모제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경우 신규보직 심사의 내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1. 보직연장 심사에서 연장이 부결된 자는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

2. 징계처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보직심사 결과의 승인) 원장은 보직심사 결과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보직심사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서

○ 대상자

소속 및 직위	성명	학위	연구관임용일 (최초 임용일)	현 직위 임용일	비 고

○ 평가

평가 항목	배점 기준 (○표)					점수
	탁월 (20점)	우수 (17점)	보통 (14점)	미흡 (11점)	불량 (8점)	
① 연구목표 추진성과						
② 전문가적 능력						
③ 전략적 리더십						
④ 문제해결 능력						
⑤ 조직관리 능력						
합계						

※ 평가는 절대평가로 함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인)

다면평가서

- 평가자는 제공되는 "보직심사자료",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과장으로서 역량적합 여부를 기재(O, X)하고 부적합할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 평가요소 : 경력·연구실적·직무수행능력·지도력 및 관리능력

연 번	다면평가 대상자 현황			역량 적합 여부 (O, X)	부적합 사유
	소 속	직 급	성 명		
1					
2					
3					
4					
5					
6					

※ 다면평가를 전자 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대체하는 경우
다면평가서의 서식과 내용은 별도로 정함.

적격성 심사서

평가대상자 : 소속	직급	성명
------------	----	----

평가 항목		배점 기준(○표)					점수
		탁월 (20점)	우수 (17점)	보통 (14점)	미흡 (11점)	불량 (8점)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 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문제해결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 공유 능력 - 업무 개선 능력 - 자원 활용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합계							

※ 피평가자의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간격이 총점을 기준으로 20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인)

보직심사 의결서

☐ 일 시 :

☐ 장 소 :

☐ 건 명 :

☐ 결정 내용

20 . . .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자로 임명된 사실 및 평가결과 등 동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